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AI: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감독 영역인가?」 외 4분기 동향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FAQ
- 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024 Governance Outlook, Artificial Intelligence: An Emerging Oversight Responsibility for Audit Committees?

인공지능(AI):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감독 영역인가?

- ▶ 생성형 AI의 등장을 비롯한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들은 비즈니스 기술 전략에 대한 AI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 기업이 특히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AI 사용을 확대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거버넌스 및 이해관계자 신뢰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AI가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를 이해해야 함
- ▶ 딜로이트와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가 수행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36%)가 AI 감독 규정·절차의 개발과 실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공식화된 AI 감독 프레임워크를 갖추었다고 답변한 응답자(13%)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감사위원회에게 있어서 AI 거버넌스의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평가이지만 현재로서는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 작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임
 - 지속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조직의 AI 도입 및 사용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다음의 질문사항은 감사위원회가 AI 전략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	회사가 현재 및 잠재적인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AI 사례는 무엇이며, 이 중 재무보고 또는 기타 감사위원회 감독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가?
2	경영진은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AI 활용 기회를 고려하였나?
3	감사위원회가 주요 감독을 담당하는 사이버보안 또는 데이터 관리와 같이 다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존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가?
4	AI 사용 프로세스가 리스크 사전대응 수준 및 완화 전략 측면에서 회사의 리스크 선호도와 일치하는가?
5	AI 기술 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프로세스가 적절한 빈도로 평가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는가?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Board Practices Quarterly 12월호, CEO succession planning processes

CEO 승계계획 프로세스

- CEO 승계계획은 이사회와 주요 책임 사안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최고 경영자(CEO)가 회사의 대리인으로 인식되어, 필연적으로 회사의 전략적 방향, 운영 및 평판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임
- CEO 승계실패로 인한 비용과 CEO 교체율의 급격한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계획된 혹은 예상치 못한 리더십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견고하고 공식화된 프로세스와 실무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함
- 본 보고서는 102개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베이 결과에 기반함
- 서베이 주요 결과

1. 귀사가 보유한 승계계획은 무엇입니까?

- 응답자의 67%는 계획된 퇴임을 대비한 CEO 승계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0%는 예상치 못한 퇴임을 대비한 CEO 승계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CEO 승계계획이 공식화/문서화되어 있습니까?

- 대부분의 회사는 공식화 또는 문서화된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퇴임에 대한 계획은 대형 및 중형 상장법인 각각 72%, 90% 보유하는데 비해 계획된 퇴임에 대한 승계계획은 대형 및 중형 상장법인 각각 53%, 55%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됨

3. 다음 중 (긴급상황이 아닌) 계획된 CEO 승계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 대다수의 응답자는 조직내부자를 잠재적 CEO 후임자로 지명 및 이사회위원회에 대한 절차가 포함한다고 응답
-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내부 후보자를 위한 전문성 개발, 준비계획 및 '후보자 기준'을 포함한다고 응답

4. CEO 승계계획이 이사회 및 담당 위원회에서 얼마나 자주 검토됩니까?

- 응답자의 72%는 CEO 승계계획이 연 1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응답

5. 귀사의 CEO 승계계획에 대한 주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응답자의 56%는 이사회가 CEO 승계계획에 대한 주요 책임을 담당한다고 응답

6. CEO, 이사회 및/또는 담당 위원회가 CEO 승계계획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CEO, 이사회, 위원회 및 기타 경영진의 참여 수준은 시가총액별로 다르며, 참여방법으로 계획 수립·검토·승인, 후보자 프로필 발굴, 후보자 식별·인터뷰, 후임자 및 서치펌 선정 등이 있음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NACD's 'Directorship' magazine, Boards and transformation initiatives: Strategy is just the beginning

이사회와 전환 이니셔티브 :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다

- ▶ 기업의 전환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이는 인수·합병(M&A), 구조조정, 자산 매각 및 인력 재구성 등 다방면의 노력을 포함함
- ▶ 각 프로젝트는 기업운영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조직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 이사회는 전략 수립에서부터 실행 모니터링,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환 이니셔티브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마진 개선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진 개선은 성장, 유동성, 비용절감 및 인재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조직의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임 • 최근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300명의 경영진이 마진개선 장벽으로 인재부족(48%), 인플레이션(46%), 공급망 제약(38%)을 선정함 • 해당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들은 추적 및 보고(72%), 데이터 가용성(62%), 리더십(46%)을 성공의 핵심요소로 지목함
마진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진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으로 추적 시스템(72%), 데이터의 중요성(91%), 리더십(46%)을 꼽았으며 소수만이 거버넌스(28%)로 응답함 • 전환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검토를 통해 이사회는 필요시 신속하게 전략 전환 역량을 갖출 수 있으며 선제적 대응은 목표실현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함
이사회 모니터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한 공식화된 프로세스는 이사회 참여를 더욱 촉진함 • 이사회 참여의 이점과 잠재적 장벽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이사회는 이러한 전환 프로젝트의 후기단계에서 참여가 소극적 - 추적·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도 해당 정보가 항상 이사회에 전달되는 것은 아님 -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는 전략 수정을 용이하게 함

▶ 이사회 고려사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이사회 감독 및 모니터링 활동이 진행중인 전환 이니셔티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한가? • (그렇다면) 필요시 신속한 전략 전환이 가능할 만큼 모니터링이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는가?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The Wall Street Journal' article - Audit Committees: So Much More Than Financial Statement Oversight

감사위원회: 재무제표 감독 그 이상의 역할

- ▶ 기업의 복잡성과 운영 환경이 확장되고 심화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역할 범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 ▶ 딜로이트의 최신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Audit Committee Practice Report)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응답자들은 재무보고 및 통제를 제외하고 사이버 보안(63%), 전사적 리스크 관리(45%), 그리고 ESG 공시 및 보고(39%)를 올해의 3대 중점 영역으로 예상함
- ▶ 주요 내용

인공지능(AI) - 어디에 적합한가?

- 최근 많은 감사위원회에서 기술 관련 이슈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조직에서 기술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감독 주체를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음
- 딜로이트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97개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AI)에 관한 주요 감독 책임 주체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ESG - 더 이상 자발적 노력이 아님

- 많은 기업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ESG와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공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감사위원회가 ESG 안건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업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해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준을 통합하고 향후 세계 각국에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증가하는 감독 범위

- 규제환경 강화부터 신기술 등장, 기후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새롭게 기대되는 요구사항에 이르기까지 감사위원회의 책임 범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중대 변화가 있는 현시점이 이사회와 위원회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 경영진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법을 찾을 적기임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The Wall Street Journal' article - 9 Steps to Help Uncover, Assess Internal Fraud Risk

부정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9가지 방법

➤ 딜로이트 글로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정은 경영진들 사이에서 최대 우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정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함

* 다양한 산업분야의 임원 73명의 의견 수록

- 부정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우려사항은 '윤리·컴플라이언스 규정 위반 행위(76%)', '법규 미준수(70%)' 및 '도난·횡령(51%)'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상당수는 '부인문화(Denial Culture)' 즉, '자신의 조직에서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부정 리스크 관리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함
- 리더들은 전략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견고한 '부정 리스크 평가(Fraud Risk Assessment, FRA)' 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구분	내용
1	체크리스트 방식의 절차나 재무보고 통제에만 집중하는 한정된 노력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부정 리스크 평가를 수행함
2	'부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이해관계자 교육을 통해 부정 리스크와 회사의 부정 예방·적발·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3	부정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는 적절하고 충분한 인력이 참여하도록 함
4	기업의 전반적인 부정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부정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 산업 내 사례 및 최신 동향을 고려함
5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식별함
6	부정 리스크 식별 시 다양한 부정계획과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통제효과를 테스트함
7	부정 리스크 평가를 통해 부정행위를 통제하고 대응계획을 실행함
8	주기적으로 평가를 재검토하여 내·외부요인에 대응함
9	결과를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효과적으로 전달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29(금) 금융감독원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3.12.29. 시행

- ▶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23.06) 및 '외감규정 개정'(23.09) 등을 반영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함
- ▶ 주요 개정 내용

1. 감사인 기업간 감사시간 등 합의과정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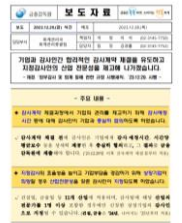
문제점	감사계약 체결시 보수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이 감사보수의 적정성 등 파악 곤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계약 체결 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 (23.12.19.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예상감사 시간을 감사단계별 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 -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도 해당 정보 뿐만 아니라,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요구 - 당기예상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 보다 충실히 협의하도록 유도

2.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고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 지정 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 감사인을 순차적으로 지정하며, 기업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시간 증가 등으로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사 희망시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기준 마련 - 건설,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24년에는 건설, 금융, '25년에는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 - 11개 산업에 속한 상장사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적시 -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산업전문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필요 업무에 배정하여 감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감사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서명

- ▶ 감사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기업에 상세히 제공되어 감사인-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되어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수검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29 (금)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 강화 및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 명확화

- ▶ 작년 5월 2일, 외부감사규정(제6조 제4항)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할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부여됨에 따라 경영진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 내실화, 외부감사 및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근거를 마련함
- ▶ '23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존재하여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9.)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

다운로드



QR 코드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지침

-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규준을 보완하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
-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 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업무 흐름에 따라 제시 및 세부 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
 - ①재무보고 위험과 통제 식별 → ②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 ③통제의 미비점의 효과 → ④평가결과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절차와 운영 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포함할 사항을 규정

<표1> 보고서 신설·추가사항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 → 주총 이사회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내역,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등 추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자금관련 부정 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 추가

- 24.1.1부터 시행 (1년간 기존 모범규준 적용유예기간 부여)

2.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하여 실무적용상 혼란 해소

양적기준	업계 실태파악 및 협의를 통해 '매출 등 주요지표의 15%(1단계)와 '중요성 금액의 4배(2단계), 8배(3단계)' 등으로 제시
질적기준	실질적으로 내부회계 관련 위험이 높은 부문이 평가보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감사기준서 내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
참고사례	상장회사와 감사인들이 쉽게 이해·적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구체적 사례도 제시

- ▶ 자율규제 규정화 통해,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제고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일관되게 선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 될 것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26 (화) 금융위원회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

- ▶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022년 3월, 일반 기후 및 기후분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3.6월 첫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 및 S2(기후) 최종안을 발표함
- ▶ 여러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ESG 공시 의무화를 '26년 이후로 하되 대형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 움직임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ISSB 기준(IFRS S1 및 S2)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함
- ▶ ISSB 기준 번역 대상 개요

다운로드



QR 코드



IFRS S1 기준서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시 준수해야 할 일반 요구사항으로 문단 1~86 및 부록 A~E로 구성되며, 부록 문단 포함 모든 문단은 동등한 권위를 가짐

IFRS S2 기준서

- 기후 관련 공시로 문단 1~37 및 부록 A~C로 구성되며, 부록 문단 포함 모든 문단은 동등한 권위를 가짐

IFRS S1 및 S2의 결론도출근거

-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상 맥락을 제공함

IFRS S1 및 S2의 부속지침

- 예시지침 및 예시사례로 구성된 비강제 지침으로서, ISSB 기준 적용상 편의를 제공함
- S2의 부속지침 중 IFRS S2에 대한 산업기반 지침은 '24년도 중 번역 예정임

- ▶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더불어 ISSB 기준의 내용과 상호운영 가능하도록 제정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성 기준(예: EU ESRS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계속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 등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26 (화) 금융감독원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기말에 감사를 수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안내함

▶ 주요 내용

1. 자기책임으로 작성한 감사전(前) 재무제표 제출

-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 할 의무가 발생하며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사전 준비 철저

- '23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고, 이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
-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설계·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여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한 대응 필요
-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 필요

3.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 강화

- 금감원이 사전예고('23.06)한 '24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회계처리시 충분한 주의 필요

4. 회계오류 최소화, 사후발견시 즉시 정정

- 회계오류 발견시 기업은 오류의 성격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자진정정시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 적용

5. 감사의견 관련 공시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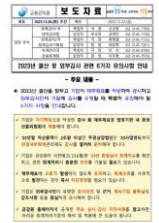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 의견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충실히 기재하여 공시해야 하며,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

6.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 감리 지적사례 참고 시, 어려운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도움이 될 것임

▶ 금감원은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배포하는 한편, 향후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21 (목) 금융감독원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21일에 '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함
- ▶ 주요 논의 내용

다운로드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원장 박정호)은 21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 내부통제(Regtech)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2.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
- 3.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발표

워크숍은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 내부통제(Regtech)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2.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
- 3.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발표

QR 코드



1. 디지털 내부통제(Regtech)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규제(Regulation) 준수업무를 지원하는 기술(Technology)'을 뜻하는 레그테크(Regtech)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사들은 자금세탁방지(AML)·여신·마케팅 업무 등에 레그테크를 도입해, 대용량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인적오류 방지, 준법감시 프로세스의 효율화 등의 달성 사례를 소개함
- 국내은행도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해 레그테크 시스템의 개발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2.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

- 그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내부통제 혁신방안의 보완을 추진해왔으며, 금일 개선안을 발표함
 -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방안을 보완하고, 혁신방안의 조속한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①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②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③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강화, ④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⑤고발업무 강화, ⑥KPI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
- 동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23.12) 등을 거쳐 금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임

3.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발표

신한은행	지배구조법 개정과 관련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방안 사례 등을 은행권과 공유
하나금융지주	은행지주그룹의 표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지주의 그룹 내부통제 강화사례 공유
케이뱅크	은행대출사기에대응하여비대면대출에대한이상탐지시스템(FDS)운영사례 등을 공유

- ▶ 은행 내부통제의 취약부문을 재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내부통제에 관한 다양한 실제 운영사례가 공유됨에 따라 은행권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번 개선안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신속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21 (목)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공표

- ▶ 작년 7월에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의견을 수렴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작년 12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례회의에서 의결됨
- ▶ 가상자산 공시를 강화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가 개정공표(12.13)됨에 따라, 가상자산 주식공시 모범사례도 공개함
-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회계기준서의 주요 내용

1. 발행기업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 인식 가능

-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

2.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

-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향후 제3자에게 이전 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식으로 공시

3. 가상자산 취득 목적,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분류

- 취득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 (예: 기타자산)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여부 따라 재무제표 계상 또는 주식공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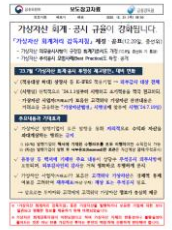
- 통제권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식으로 공시

5. 백서의 주요내용 상당수가 주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야 함

-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되므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

-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됨
- ▶ 금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조기적용 적극 권장)되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법령 시행일('24.7.19)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21 (목) 금융감독원

대형(Big4)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시 기업의 체크포인트

-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18일, 대형회계법인(이하 'Big4')과 함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관련 개선내용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함
- 관행 개선방안별 기업의 체크포인트

구분	내용
감사보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g4는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 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g4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협의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감사보수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g4는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종료 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종료 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여 환급 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
부대비용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g4는 부대비용 청구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항목은 부대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지급할 부대비용 항목을 협의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부대비용 지급시 세부명세서를 수령하여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외부평가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g4는 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 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g4 회계법인이 특정 계정과목 등에 외부 평가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 다만, 기업이 저가의 부실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일부 기관의 평가를 제한할 수 있음
회계사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g4는 중요과목(매출, 매출원가 등)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g4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시 제시한 수준에 비해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

- 금융감독원은 금번 Big4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20 (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 작년 12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기업 A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함
 - 사외이사 甲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로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함
- ▶ 증선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함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사외이사의 이익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甲은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이익을 추구함
직무상 지위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甲은 이사회원의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직접 참여한 자로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회피해야 함에도, 지득한 정보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직무상 지위를 남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甲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혐의도 적발하여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함

- ▶ 상장사 및 임직원 유의사항

구분	내용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준)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자는 상장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을 의미하며, 사외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서 규율 대상에 포함 • 사외이사는 기업 권력의 집중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보호에 기여해야 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 노력이 요구
상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사주 매매관련 준수사항을 안내·교육해야 하며, 점검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대한 인식과 준수노력이 사내이사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장사는 사외이사가 안내와 교육, 내부통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13(수) 금융감독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

- ▶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12일,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함
- ▶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나,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은행의 지배구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대체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하여 업계 자율 모범 관행도 부족함
- ▶ 모범관행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1.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6개 핵심원칙]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
-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이사회사무국)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

2.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10개 핵심원칙]

- 상시후보군의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 마련
- 상시후보군 선정 관리, CEO 자격요건, 승계절차 개시 및 절차, 비상승계계획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CEO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주체 및 방법 다양화

3.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9개 핵심원칙]

- 은행의 규모, 복잡성, 위험 프로파일, 영업 모델에 적합한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고 독립성 확보
- Board Skill Matrix (역량진단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경로를 다양화하고 적정 임기정책을 마련하며, 사외이사 선임시 자격 검증 강화

4.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5개 핵심원칙]

- 이사회,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의 유효성을 실효성 있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 등과 연계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정 평가주체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및 정량평가 확대하며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등 환류 기능 강화

- ▶ 금번 모범관행은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모범사례를 종합하고, 은행권 외부전문가와의 심층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내은행 지배구조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13 (수)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2.12) 및 외부감사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12.13)

- ▶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일인 12월 19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임
- ▶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의 주요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1.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5년 유예

- 코로나19 상황 및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연기함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4년 → '29년, 자산 5천억원 미만: '25년 → '30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였음

2.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고려함
-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 종목 지정'은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4회계연도에 이미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되었더라도 해당 지정 효력은 상실함

3.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4명→3명)하고 추천기관을 금감원으로 변경함
-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과 금감원 인원만으로 회의 개최 및 결의 가능*하다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임

* 심의위원회는 전체 2/3의 출석으로 개의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부당행위를 한 지정감사인이 조정 거부 시 지정취소 건의까지 가능

5. 거래소의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지원

-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간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 요구,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 소규모 상장사가 요청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6.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시 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제도 보완 및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부과평성을 제고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8 (금) 금융감독원

내년 말부터 금융사 임원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 ▶ 12월 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
- ▶ 관련 규율이 '형식·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번 개정으로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다운로드



QR 코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

-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 함으로써 금융사가 스스로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 금융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는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사는 임원이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정직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함

<표1>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점

은행	금융지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 이상 운용자산 20조 이상 종합투자회사	자산총액 5조 이상	자산총액 5조 이상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조 미만 운용자산 20조 미만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자산총액 5조 미만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 2단계(1년) → 3단계(5년이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함
- 특히,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되며, 금융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역할이 명확화 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및 면책 기준

-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 제재를 부과하나,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금융당국은 금융업과 함께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을 위한 모범사례 전파 등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임

- ▶ 금번 개정으로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금융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6 (수)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함
 - 상법 유권해석·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코스닥) 2,267사 중 636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동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운로드



【주요 내용】
 1. 배당금에 대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2. 배당금에 대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3. 배당금에 대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4. 배당금에 대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QR 코드



<표1>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단위: 사, %)

유가			코스닥			합계		
전체	정관정비	비율	전체	정관정비	비율	전체	정관정비	비율
780	185	23.7	1,487	451	30.3	2,267	636	28.1

* ① '23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회사 및
 ② 기존 정관을 활용하여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한 회사를 합산한 수치

-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것이 권고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先배당액 확정, 後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할 것이 당부됨
-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30(목) 금융감독원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 마련

- ▶ 전기오류수정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별 공시방식이 다양하고 미비한 경우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함
- ▶ 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 모범사례 주요 내용

1. 전기오류의 성격 관련 기재사항 구체화

- 공시의무가 있는 전기오류의 성격을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 전기오류의 성격을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별로 구분된 표준 서식을 마련함

오류 계정과목	오류로 인해영향받는 재무제표 계정과목 공시, 오류 발생 경위와 연관 계정과목 모두 기재
발생 경위	오류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의 구체적 기재, 유형이 다른 경우 항목별로 구분 기재
오류의 내용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별로 구분 공시 및 각 사업연도의 영향 구분 기재
관련 기준서	오류 발생 계정과목 관련하여 연관된 기준서 및 문단 공시

2.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 구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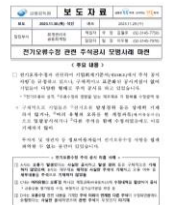
- 일부 기업들은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금액적 효과(영향)를 구분 표시하지 않고 합산 공시하여 유형별 세부 수정금액 파악이 곤란함
- 전기오류 항목이 여러 유형일 경우 각 전기오류 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를 구분 표시(㉠㉡ 등)토록 개선함
 - 금액적 효과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합산하여 표시 가능하나 전기오류의 성격은 모두 각각 기술 필요
 - 관련 수정금액은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별 금액을 기재하며, 여러 유형의 오류 발생시 각각 구분(㉠㉡ 등)하여 기재 필요

3. 오류수정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주식번호 연계 표시

- 재무제표 재작성시 연계된 다른 주식도 수정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재작성 사실만 공시하여 이해도가 저하됨
-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라 다른 관련 주식이 수정될 경우 해당 주식번호를 각 계정과목별로 공시하도록 모범사례 서식에 추가함
 - 관련주식은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작성된 계정과목과 관련된 주식번호를 서식에 표시토록 함

- ▶ '23사업연도부터 기업이 전기오류수정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주식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내용을 안내하고 모범사례를 작성지침에 반영하여 기업이 참고토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28 (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인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41개 보험회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함(11.28)
- ▶ '18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5억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표1> 보험회사 금융사고 보고 현황('18년~'23.06)

(단위: 건, 억원)

구분		'18	'19	'20	'21	'22	'23 상반기	합계	연평균
생보사	건수	9	8	10	7	4	2	40	7.3
	금액	25.6	8.4	21.5	9.5	2.6	2.1	69.6	12.7
손보사	건수	7	7	9	10	5	2	40	7.3
	금액	9.7	256.3	122.4	18.0	10.8	0.2	417.4	75.9
합계	건수	16	15	19	17	9	4	80	14.5
	금액	35.3	264.7	143.9	27.5	13.4	2.3	487.0	88.5

- ▶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임
* 법률(19.4%), 재무·투자(14.1%), IT(4.6%) 등
 -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자가 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확인됨
- ▶ 금융감독원은 다음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향후 위법행위 방조, 은폐, 내부통제 업무 소홀시 감사,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임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

- 회사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담당(전문)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 통해 정하고 단계적 추진
-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병행, 내부통제 미준수시 페널티 부여, 개선요구 절차 마련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 강화
명령휴가	대상 점검방법을 내규에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내부고발	신고의무위반시 조치의 합리적 개선 및 내부고발의 건설적인 활성화를 위한 내부통제 문화 조성
예방지침	직업업무별 역할·책임 체계화, 사고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포함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 ▶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여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점검하고 취약사항은 신속 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여 보험업권에 맞는 사고예방 모범규준을 '24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27(월) 금융감독원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은 '22년도 지적사례 18건을 공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2년간('11년~'22년) 지적사례 총 141건을 공개함*

*금년부터는 감리 지적사례 뿐 아니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포함하여 공개

- 22년도 심사·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3건), 투자주식 평가 오류(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2건) 등으로 구성됨

<표1>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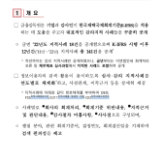
(단위: 건)

공개 시기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22년	21년	'11년~'14년	20년	'15년~'17년	'18년~'19년	'11년~'22년	
지적 유형	매출·매출원가	3	4	4	5	12	4	32
	투자주식	4	3	4	5	6	4	26
	재고,유무형자산	3	3	-	1	5	7	19
	기타자산 부채	5	2	8	2	5	7	29
	주식미기재 등	3	3	11	2	9	7	35
공개사례 수(합계)	18	15	27	15	37	29	141	

-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예시 (요약)

구분	내용
매출·매출원가	•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
재고자산	• B사는 판매 목적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해짐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C사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
이연법인세부채	•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해당 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
특수관계자 주식 미기재	• E사는 거래처인 F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과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F사의 매출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식에 미기재

다운로드



QR 코드



별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24 (금) 한국ESG기준원

2023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 한국ESG기준원은 11월 24일, 한국거래소에서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함

- ESG기준위원회는 ESG 평가결과상위기업에 해당하는 '우수기업 등의 후보기업' 중 심의를 거쳐 ESG 개선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함

▶ 지배구조 우수기업 부문 및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구분	일반상장사	금융사
대상	-	-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케이티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디앤디(주)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코스닥) (주)삼표시멘트 (코스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캐피탈(주) (주)KB국민카드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회사명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사유
일반 상장사	(주)케이티앤지	건전한이사회 운영을 바탕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가 회사 전략 수립과 실행에 적극 관여하며 견제감독기능 충실히 이행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고경영자 승계계획을 수립, 정기적인 후보군 관리
	SK 디앤디(주)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 관행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개별 사외이사 평가 실시, 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등 보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으로 경영성과와 연동된 이사 보수 지급을 위해 노력
	씨제이 프레시웨이(주)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내 우수 지배구조 관행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자산규모 대비 선도적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다양성 제고 사외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이사회 전문성 제고 노력
	(주)삼표시멘트	이사회 운영 관행 개선, 지배구조 정보 공개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평가 도입,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 (ESG 등급 등 홈페이지 공개) 이사회 승계관행 개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등)
금융사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주)	전문성이 높은 이사회, 지주회사와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사-자회사 이사회 간 적절한 역할분배를 통해 그룹사 간 조화의 균형 구축 체계적·효율적인 ESG 거버넌스 확립 및 효과적인 ESG 경영활동 관리감독
	현대 캐피탈(주)	건전한 이사회 활동과 이사회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활동 교육, 사외이사 지원개선 등 건전한 이사회 운영관행 유지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구의 독립성 등 건전한 내부통제 운영
	(주)KB 국민카드	효과적인 ESG 경영활동을 위한 ESG 거버넌스 정비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리스크를 경영전략 내부통제에 체계적 반영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노력 ESG 성과 지표 마련 등 지속가능경영을 유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20 (월) 금융감독원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

- ▶ 금융감독원이 '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23.11월)한 결과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사 중 절반 이상인 129사(55%)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①메타버스, ②가상화폐·NFT, ③2차전지, ④인공지능, ⑤로봇, ⑥신재생에너지, ⑦코로나
- ▶ 미추진 기업(129사)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회계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추진 기업은 대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으며, 횡령·감사의견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해지,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
불공정거래 의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CB전환·주식 매도 등의 부정거래 혐의 의심 기업이 일부 발견 • 그 외 기업도 역량,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보여주기식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상존
상습 공시위반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추진 기업 중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25%(31사)이며,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 관련 '23년 반기보고서 중점 점검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65%(84사)에 이르는 등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 * 과징금, 과태료, 경고, 증권발행제한조치 등
빈번한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21년~'23년 6월말 기준 전체의 74%(95사)임 •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횡수: 평균 4회, 주로 사모)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 0.9회)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자금조달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할 우려도 있음

- ▶ (회계감리 1·2국) 미추진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역량 집중 및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 예정임
- ▶ (조사 1~3국)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점검 및 필요시 철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 (공시심사실)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는 등 중점 심사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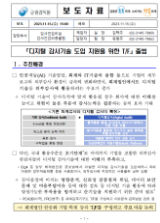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15 (수) 금융감독원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TF 출범

- ▶ 인공지능(AI) 기술발달, 회계와 IT기술의 융합 등으로 기업의 재무 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외부감사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함
 - 디지털 기술이 감사목적에 맞게 활용될 경우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이 높은 부문에 감사노력을 집중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국내 활용수준은 초기단계*로 아직까지 기업을 포함한 외부감사 관련자들의 디지털 감사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 Big4 등 일부 회계법인은 글로벌 체제 개발 등을 사용중이나, 외부감사에 직접적인 사용률은 낮은 상황
- ▶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여 회계법인·한공회·기업·학계 등과 T/F를 구성하고 주요이슈를 논의함
- ▶ 주요 논의과제

다운로드



QR 코드



1. 현황·영향분석 및 감독이슈 점검

현황 및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회계법인이 현재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현황 및 글로벌 회계법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사례 분석 •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뢰성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디지털 기술의 알고리즘과 해당 알고리즘의 적합성 검증 방법·절차 검토
대용량 데이터 공유 및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감사에 필요한 기업정보의 감사인 공유 시스템 마련 및 이에 따른 데이터 보안 방안
감사절차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증거 및 감사 과정 등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등 개정 필요사항 검토 <p>* 수집하는 감사증거의 형태, 감사증거 검증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범위 등</p>

2.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지원 방안 마련

회계법인가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과 중소형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중소형 회계법인 지원방안 등 마련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감사기술을 이해·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방안
비용부담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감사기술의 개발·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방법 등

- ▶ 금융감독원은 초기단계인 디지털 감사기술이 활성화되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T/F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15(수)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보완방안*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 및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함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5),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차 개정(23.5.2), 동 규정 2차 개정(23.9.14)

▶ 주요 개정내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마련

-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용어, 서식 등을 정비
 - '24.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도 적용 가능

2.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
 - * 산업전문성 산업(11개),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
 -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5년부터 시행할 예정

3.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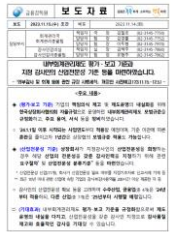
- 외감규정(제12조 제3항)의 개정으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토록 개정하고, 변경된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
 - * 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3년연속 부(+)영업현금흐름 또는 ③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

▶ 외감규정시행세칙개정안은 사전예고(11.15~12.5)를 실시하고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것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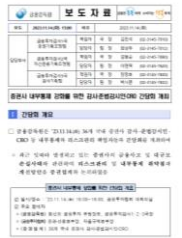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14 (화) 금융감독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CRO 간담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36개) 감사·준법감시인·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및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증권업계와 논의함

다운로드



QR 코드



1.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 강화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

- 최근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어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함
 - * 사고 건수(금액) : '19년~'22년 (평균) 7.8건(143억원) → '23년 14건(668억원)
- 금융사고 은폐행위를 중대사안으로 인식하고 전수점검을 진행중이며, 향후 금융사고 인지도 즉시 보고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하게 한 경우 감사·준법감시인·CRO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임

2.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부동산PF, 기업금융 등에 불법행위가 집중되어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대폭 강화 필요

- 불충분한 내부통제는 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높이는 것을 인식하고 IB부문의 내부통제 대폭 강화를 당부함
 - 최근 IB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증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함
- 금융감독원은 IB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내년에도 지속 검사할 예정임

3. 리스크관리 강화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의 충분한 확보, 리스크관리 수준 강화 필요

-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시 Due Diligence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함
-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대규모 미수금사태의 재발 방지 위한 관리를 요청함

4. 최고경영진과 소통 강화

점검결과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 필요

-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강화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서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 신속한 업무관행 개선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함
- 향후 금융감독원도 내부통제상 중대한 취약요인을 확인시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직접 설명하는 등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업계와 수시로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소통·협력하여 개선방안 모색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1 (수) 금융감독원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진행 실태분석 결과

▶ 금융감독원은 '23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상황
기재를 중점점검하고,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함

* 23.6.30.정관상사업목적으로 추가한신사업의진행경과등을 정기보고서에기재토록서식개정

▶ 주요 내용

1. '23년 반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 최근 3년간 사업목적지를 추가한 총 1,047사 중 작성기준을 모두 준수한 회사는 516사(49%)임
- 점검항목 별로는 '③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② 사업 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의 미흡률이 각각 38%, 35%로 높음
- 유가증권(47%)과 코스닥 상장사(52%)간 미흡률 차이는 크지 않음

<표1> 중점점검 결과

(단위: 사, %)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점검대상	326	(100)	721	(100)	1,047	(100)
양호	173	(53.1)	343	(47.6)	516	(49.3)
미흡*	153	(46.9)	378	(52.4)	531	(50.7)
① 사업목적 현황	4	(1.2)	15	(2.1)	19	(1.8)
② 사업목적 변경내용	90	(27.6)	279	(38.7)	369	(35.2)
③ 사업 추진현황	127	(39.0)	275	(38.1)	402	(38.4)

*점검항목(①~③) 중복 계거

2. 주요 신사업 추진 실태분석

- 테마주로 알려진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21~22)한 233사 중 추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모두 있는 회사는 83사**(36%)이며, 일부 사업이라도 매출실적이 있는 회사는 47사(20%)에 불과함
 - * 조직·인력 구성, 연구 및 제품개발, 매출발생 등
 - ** 추가한 신사업 중 일부 사업만 추진실적이 있는 회사까지 포함시 104사(45%)
 - 미추진기업 129사(55%)는 추진기업 대비 다년간 영업손실,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고,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사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가 다수
 - 신사업 발표 직후 추가급등시 최대주주 관련자가 CB 전환 후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철회하는 등 허위신사업 이용 부정거래 혐의 기업도 일부 발견

▶ 작성기준에 미흡한 531사에 중점점검 결과 및 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하여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시 보완토록안내할예정임

▶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적발시엄중조치할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0.27(금)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의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함
- ▶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짐
- ▶ 개정 주요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1. 일반원칙 신설

- (현행) 의결권 행사 실무 관련 모범기준 부재
- (개선)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

2. 실무중심 편제 개편

- (현행) 주주총회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되어 있어 단시간 내 많은 안건을 분석하는데 비효율적임
- (개선) 참조가 용이하도록 기업 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편제 개편

3. 법규와 권고사항 구분, 원칙과 사례 명확화

- (현행) 법규와 권고사항, 원칙과 사례 불분명
- (개선) 이사 선임요건 등 법규에서 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원칙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고려요소 및 사례를 구분하여 제시

4. 사례 보완 및 현행화

- (현행) 최근 개정('16.6월) 이후 최신 사례 부족
- (개선)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ESG 등 최신 사례 보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및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ESG 평가지표별 가이드라인 제시('21.12월)

5. 의미 명확화 및 용어정비

- (현행) 의미와 표현이 모호
 - (개선)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
- * (예)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수 → 의결정족수, 법정주식수 → 발행주식수

- ▶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함
- ▶ 동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0.27 (금) 한국ESG기준원

2023년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여 2023년도 ESG 등급을 공표함

- 지배구조평가분야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지배구조	•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이해관계자 소통
금융사 지배구조	• 이사회, 주주권 보호, 최고경영자, 보수,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소통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ESG등급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함

- 'B+' 등급 이상은 42%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하였으며, 'B' 등급 이하의 비율은 58%로 전년 대비 10%p 하락함

▶ 지배구조의 경우 전반적 평균이 상승하고 최상위권 기업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상·하위권 편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실질적인 지배구조 관행 개선 없이는 등급 상승이 어려운 점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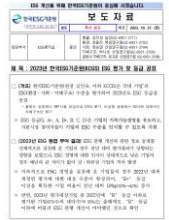
▶ 금융사 지배구조의 경우 등급 구간별 기업 분포는 전년과 유사하나, 중위권이던 보험업 및 여신전문금융업에서의 ESG 경영전략 내재화, 위험관리제도 및 승계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견인함

<표1> 지배구조 및 금융사 지배구조 영역의 전년 대비 등급 부여 현황 (유가증권시장)

등급	지배구조		금융사 지배구조	
	2023	2022	2023	2022
S	-	-	-	-
A+	8(▲3)	5	5(▲2)	3
A	110(▲33)	77	31(▲5)	26
B+	146(▲5)	141	44(▼6)	50
B	129(▼8)	137	25(▲1)	24
C	152(▼6)	158	7(▲1)	6
D	200(▼8)	208	5	5
총계	745(▲19)	726	117(▲3)	114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금융사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상위권 기업의 비율이 증가 또는 유지되었으나, 'B' 등급 기업의 비율은 줄어 하위권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0.25(수) 금융감독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 금융감독당국은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 1,340만원(1인당 평균 4,26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

- 금년 9개월간의 지급금액이 전년 대비 1억5,690만원 증가(278% ↑)하였으며, 남은 3개월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금 현황

(단위: 건, 만원)

구분	'08년~'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급건수	10	1	2	12	5	2	5
지급금액	11,360	330	11,940	40,840	22,860	5,650	21,340
평균지급금액	1,136	330	5,970	3,403	4,572	2,825	4,268

*신고접수된 제보 건 중 '23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지급 건

▶ '22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하였고, 이 중 22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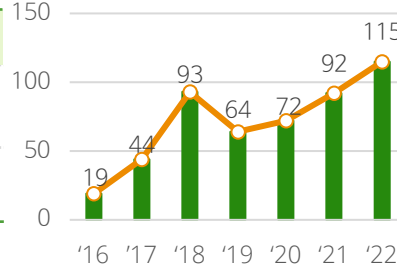
* '23.1월 ~ 9월 중에는 76건(익명신고 15건) 접수

<표2>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단위: 건,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19	44	93	64	72 (17)*	92 (14)*	115 (22)*
전년대비 증감률	△136	1316	111.4	△31.2	125	27.8	25

*익명신고 접수 건



▶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2년까지 총 25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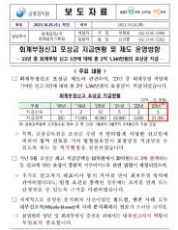
* ('17년)2사 → ('18년)6사 → ('19년)3사 → ('20년)6사 → ('21년)5사 → ('22년)2사

- 이 중 23사는 조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2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 진행중이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하여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함

▶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으로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의 확대', '지급금액 증액* 및 산출방식 간소화', '내부신고자에 대한 조치시 면제 또는 감경 근거 마련'이 제시됨

* 최고지급금액: 10억원 → 20억원

다운로드



QR 코드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나서자… 미소 짓는 행동주의 펀드 [조선비즈]
- 2023, 2024년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동향 및 변화 전망 [리걸타임즈]
-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혁신에서 시작된다 [오마이뉴스]
- DB하이텍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결정,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 [비즈니스포스트]
- 공정위,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공개 [슈핑뉴스넷]
- 코스피 상장사, 올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3% [뉴시스]
- 지배구조 선진화 위한 결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 EV이사회 의장 사임 [이코노믹리뷰]
- 연성규범 통한 지배구조 개선…가이드라인·모범규준 점검 필요 [쿠키뉴스]
- 지배구조 정상화 vs 적대적 M&A…MBK가 부른 행동주의 논쟁 [문화일보]
- 농심, '사외이사 리스크 일단락' 지배구조 두 계단 상승 [더벨]
- 주주제안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뚜렷 [내일신문]
- 현대백그룹, 현대지에프홀딩스 출범… 단일 지배구조 완성 [디지털데일리]
- 삼성엔지니어링,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 돌입 [달사이트]
- 공정위원장 “투명한 지주사 체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도” [머니투데이]
- 국민연금, 카카오 지분 보유 목적 변경… 주주권 행사 강화 전망 [조선비즈]



이사회·감사위원회

- 은행 이사회 다양성 제고, 전문성 확보 전제 하에 이뤄져야 [SBS Biz]
- 삼성바이오로직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화” [비즈니스포스트]
- 코스피 상장사 주주권리 보장 여건히 ‘미흡’ [비즈워치]
- SK 최태원 회장, 의사결정 위한 이사회 의 균형적 경영감독 체제 강조 [위클리피플]
- 노르웨이, 상장사 이사회 여성 비율 40% 이상…“법으로 의무화” [머니투데이]
- 이사회석은 필수…경영참여형 투자 늘리는 글로벌 VC [이데일리]
-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 예정..CEO 선임절차 논의 [민주신문]
- 흥국생명, 이사회 내 ESG위원회 출범 [연합인포맥스]
- KDB생명 인수 막은 하나금융 이사회, 제 역할했다 [아주경제]
- 김앤장 소속 사외이사, 아시아나 이사회 참여? 공정하지 못해 [지구인사이드]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한국경제]
- KCGS, 평가등급 나왔다… ESG 관행 개선됐으나 기업간 격차 늘어 [임팩트온]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 기업들,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하는 이유는 [조세일보]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4호,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선안 마련해야' [조세일보]
- 증권가 금융사고 필연이었나...3년간 중징계만 400건 [파이낸셜 뉴스]
- 글로벌 CEO의 2024년 핵심 경영 키워드 '성장관리' [이투데이]
- 딜로이트 안전·상장사협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설명회 [매일경제]
- "CBAM에 대응하려면"...딜로이트 안전, 전담팀 출범 [파이낸셜뉴스]
- '교보생명 풋음션 분쟁' 안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한국경제]
- 딜로이트, "2024년 시반도체 시장규모 400억 달러 이를 것" [IT 조선]
- 한국 딜로이트 그룹, 'COP28 어젠다' 국문 리포트 발간 [글로벌이코노믹]
- 딜로이트 안전, 코트라와 국내 소부장 대상 '글로벌 공급망 포럼'성료... [메트로신문]
- 대법원, 교보생명 소송전서 어피너티 손 들어줬다 [더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웨비나... "이사회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감사의무 주목해야" [파이낸셜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대부분 도시 인재유치·기술 개발서 어려움 겪어" [이코노미스트]
- "韓기업, 미국 진출하려면..." 딜로이트 안전, 북미 지역 투자 진출 세미나 성료 [조선비즈]
- 딜로이트 안전, Cci와 손잡고 분쟁 지원 토털 서비스 박차 [리걸타임즈]
- 딜로이트 안전·상장회사협의회 공동제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영상 19편으로 해결



회계투명성

- 기업과 함께" 지속가능 회계개혁...국가 경쟁력도 높인다 [매일경제]
-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 개시..."시장 투명성·건정성 제고" [한국경제]
- 금감원, 대형 회계법인 외부감사 관행 개선 [노컷뉴스]
-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편의성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이투데이]
- 이복현 "투명성 잃으면 회사 잃을 수 있단 맘으로 자산운용사 운용해야" [뉴스스1]
- 노조 91% '회계 공시' 참여... 투명성 강화 [세계일보]
- 한국감사인연합회, 7일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 개최 [이데일리]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SG 공시는 세계적 추세...선제적 인프라 구축 필요" [조선비즈]
- 회계 투명성 높인다...금감원, 내달 1일 설명회 [이데일리]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방지

-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준법감시인 자격 높이고 KPI 관리 강화키로 [비즈니스포스트]
- 전금업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미흡'...금감원 "개선여부 점검" [SBS Biz]
- 금감원, 올해 지방금융지주 감독강화...맞춤형 내부통제 마련 검토 [뉴시스]
- 금융당국, 이번엔 보험사 불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하라" [중앙일보]
- 금감원, "불법공매도 내부통제 시스템, 기관 스스로 갖춰야" [파이낸셜 뉴스]
- 보험사 금융사고 대책 여전히 미흡 금감원 "준법감시 강화해야" [뉴시스]
-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8건 공개 [한국세정신문]
- 실제 없는 신사업 내세운 기업들...금감원, 분식회계 여부 심사 [한겨레]
- 내년 자본시장 화두는 '내부통제'...금융당국 잇단 경고에 증권사 긴장 [아시아경제]
- 금감원 "증권사 금융사고 예방·보고체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조선비즈]
- 금감원, 올해 회계부정 신고 5건에 포상금 2억 지급 [동아일보]
- '부실 감사·권한 집중' 비영리단체 검찰 수사 대상 [중앙일보]



규제 동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 [CCTV뉴스]
- 금융위원회,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경기포커스]
- 금감원, "비트코인 선물 ETF만 거래 가능" [토요경제]
-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 공개...글로벌 공시 강화 대비 [데일리인]
- "재무제표 늦으면 감사인 지정" ...금감원, 결산 시 유의사항 안내 [파이낸셜뉴스]
- 전자 주주총회 도입...법무부 상법개정안 국회 제출 [뉴시스]
- 금융위 "ESG 공시기준, 내년 1분기 중 구체화... '기후' 우선 검토" [세계일보]
- 금융사고에 CEO 책임 묻는다...'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이코노미스트]
- 보험사 손해사정업무 50% 이상 위탁하면 이사회 보고한다 [파이낸셜 뉴스]
- 금감원, 스펙 고평가 우려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서울파이낸스]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조문 신설 [KBS뉴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에도 논란 지속 [의약뉴스]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10여개 글로벌IB 전수조사 [TBS뉴스]
- 금감원, '특별조사단' 만들어 불법공매도 잡는다... "철저히 책임 물을 것" [조선일보]
- 한국ESG기준원, 2023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열린뉴스통신]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M&A

- 삼성전자, 올해 대형 M&A 계획 나올 것 [조선일보]
- LG전자, M&A로 로봇사업 키운다 [매일경제]
- 미래 먹거리 찾아 나선 글로벌 제약사들...M&A 가속화 [메디칼타임즈]
- 위니아, M&A 매각 공식 절차 돌입...4월 투자계약 목표 [연합뉴스]
- 블랙록, 16조 대형 M&A...대체투자 부문 '큰손' 된다 [한국경제]
- IFRS17에 커진 불확실성...올해 보험사 M&A 0건 [이투데이]
- 토종 OTT 플랫폼 티빙 웨이브 합친다...국내 시장 M&A 급물살 타나 [서울경제]
- 제약사, M&A로 '사업다각화'... 오너 위기 돌파 '시험대' [뉴스토마토]
- 의지 가득했던 금융지주 M&A...결국 올해도 빈손으로 마무리 [뉴스투데이]
- 공개매수 목적, 적대적 M&A 싹 늘었다 [화이트페이퍼]
- 아모레퍼시픽-LG 생활건강, M&A로 해외 사업 돌파구 모색 [여성소비자신문]
- 금융지주, 보험사 몸값 낮아지면 M&A 등판할까 [딜사이트]
- 엔씨소프트, "M&A 통한 성장 검토, 블록체인게임 시기상조" [비즈니스포스트]
-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M&A, 5000억 간극 좁힐까 [딜사이트]
- 제약사 M&A 공든 탑, 특허로 무너진다면? [팜뉴스]
- 역대 최대 M&A 단행한 아모레퍼시픽... 중국 줄이고 '북미 집중' 가속화 [인베스트조선]
- 카카오, 속도 높이던 해외 M&A '일시 멈춤' [서울경제]
- 우리금융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검토... M&A 전략 큰 틀 변화없어" [연합인포맥스]
- 올 상반기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M&A 상승 조짐 [히트뉴스]

IV. FAQ

1. 당사는 최근 이사회 결의로 실행된 사업에 막중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주주들이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검토하는 등 이사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시 기권한 이사의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까?

-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그러나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을 행사하였으나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안건에 대해 기권한 것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1), 2)}
 - 대법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것만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반대 또는 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2) 그러나 1심과 원심은 본 사건 결의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피고들은 모두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임무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함

IV. FAQ

1. 당사는 최근 이사회 결의로 실행된 사업에 막중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주주들이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검토하는 등 이사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시 기권한 이사의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까? (계속)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워 증거가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이사회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IV. FAQ

2.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자격 요건과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전문성 확보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 ▶ 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의 경영참여가 활발해지고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으로 이사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회사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주주총회 진행과 사외이사 선임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내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을 기업에 제공해줌으로써,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임
- ▶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은 사외이사 자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상법은 일반 주식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제38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음

- 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⑦ 회사의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IV. FAQ

2.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자격 요건과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전문성 확보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속)

- 상장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 제 2항에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⑥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⑦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이 '20.1.29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¹⁾, 개정령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중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기업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임

-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냉각기간을 연장하고, 재직연한을 신설함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1)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63호 일부 개정, 2020. 1. 29

IV. FAQ

2.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자격 요건과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전문성 확보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속)

- ▶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력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동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 경력 5년 이상
----------------------------	--

-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도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³⁾
- ▶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어 사업보고서 상에서 관련 전문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 ▶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 전문성 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글로벌 감사위원회처럼 다양한 사안의 전문성 확보가 권고됨⁴⁾

2)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3)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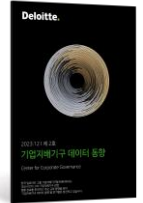
4)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2호」, 2023,12,27

V. 주요 행사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2호 발간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지난 12월 27일, FY2021~FY2023간에 걸친 국내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요 규제 동향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2호를 발간함
- ▶ 2023년 상반기에 발간한 창간호에서는 이사회에 관련한 항목 분석 결과를 게시하였으며, 금번 발간으로 국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아우르는 유관 현황과 시사점을 담아 백서와 같은 종합 조사 보고서의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함
- ▶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장은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명시된 회계감독과 업무감독을 수행하고 이사회 위임사항을 심의·결의해, 투명한 경영의사결정을 추구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회계투명성 확보'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의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논의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사유"라고 밝힘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주요내용
I. 감사위원회 주요현황 - KOSPI 200 기업을 중심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사위원회 설치 ② 감사위원회 구성 ③ 감사위원회 독립성 ④ 감사위원회 재직기간·연령·성비 ⑤ 감사위원회 안건·찬성률 ⑥ 감사위원회 회의 ⑦ 감사위원 전문성 ⑧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⑨ 내부감사부서 ⑩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 등) ⑪ 감사위원회 교육 ⑫ 감사위원 보수 ⑬ 결언
II.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②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④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⑤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⑥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YouTube] One Point 전문가 인터뷰



▶ 영상보기

QR 코드

▶ 발간물 구독

구분	상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One Point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를 소개하며 향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유익한 영상을 제공할 것을 밝힘 •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함 •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뉴스레터/Brief, 이사회·감사위원회 실무 가이드, 글로벌 자료의 번역본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영상을 제공할 예정임 •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웨비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고객 요청시 '찾아가는 세미나'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세미나를 제공함 • 센터 주요 소식 (발간물, 세미나/웨비나 등)의 수신을 원하는 경우, 우측 발간물 구독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

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설명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및 자금관련 부정사례 대응방안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12월 19일 (화) 오후 14:00 ~ 16:10
장소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지하1층)
상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강좌(3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연결 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선정 (Scoping)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오현경 금융감독원 조사역) 2강좌(4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관련 실무 서식 및 모범 통제활동 사례 (정현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3강좌(40분): 자금관련 부정사례 및 대응방안(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수석위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관련 모범기준이 이관되면서 새롭게 제정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와 자금관련 부정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상장회사 실무담당자 등의 이해도 제고와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회 개최
강의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자료다운

QR 코드



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수여식 안내

구분	설명
수상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진 학술상 Honors Award(공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진 학자 안진 학술상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 수여일이 선발공고일까지 5년 이내인 학자 중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진학자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Honors Award(공로상) 분야 1인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 분야 1인 선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회계학회는 딜로이트 안진 후원으로 올해부터 새로이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하 안진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음 ’23년 12월 4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안진 학술상” 선정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2월 초 시상 예정임

공고보기

QR 코드



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생성형 AI: 이사회가 지금 알아야 할 사항

구분	상세
일시	2024년 2월 8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비즈니스 리더 및 기술 전문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가 기존 AI 접근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선도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력 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임 • 'AI 확장과 윤리적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방법'은 오늘날 이사회 의 큰 과제임 • 생성형 AI의 미래와 이사회가 이를 어떻게 최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세계적 관점

구분	상세
일시	2024년 3월 7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비즈니스 리더 및 전문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이사회가 어떻게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이 조직 내에서 고려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적극 보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임 • 선도적인 이사회는 어떻게 이사회에 적합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모든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는지 확인할 예정임 • 특정 국가의 성별 할당제로 인해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낙후된 조직에서 이사회와 의장이 어떻게 혁신을 촉진하고 성과를 높이며 모두가 성장하는 직장을 조성하는 문화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V. 주요 행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설명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